



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



구미시 아동·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함)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2. “아동·여성 폭력”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.

제3조 (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의회,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조 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 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
 2. 아동·여성 보호·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시장이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 3에 따른 구미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 (지역연대의 설치)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7조 (지역연대의 구성) ① 지역연대 **운영위원회**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**1명**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**하고** 아동·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.

- ③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아동·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**하고**, 아동·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구미시의회 의원
2.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3. **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**
4. **청소년상담지원시설**
5. **가족지원시설**
6.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7. 교육·연구기관
8.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 관련기관
9. **지역주민대표**
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- ④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특정사안별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.

-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**하고**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.

- ⑥ 소위원회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.

제8조 (지역연대의 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아동·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
2.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
3. 아동·여성 보호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공유, 협력체계 구축 사항
4. 위기관리 및 예방지원, 공동대응에 대한 사항
5. 기타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, 지역연대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이를 대행한다.

제10조 (위원의 임기 및 관리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운영위원의 연임·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.

제11조 (회의)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시장은 지역연대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관련 정보의 제공)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 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15조 (실비보상)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 및 아동·여성보호 시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연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구미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연대로 본다.